

행 정 자 치 부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공기충전기 등 납품 검사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부산광역시

훈계대상자 부산광역시 ○○소방서(전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3. 7. 10.부터 2016. 7. 10.까지 부산광역시 ○○○
○본부 ○○○○과에서 소방장비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 또는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
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
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물품
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납품한 물품의 규
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해당물품의 대체품을 납품하거나 물품대
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5절 “물품계약의
이행”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

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같은 장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르면 계약서의 납품기한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장비를 구매함에 있어 장비 납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처리할 때는 공고된 규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당초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않으면 동등 이상의 대체 물품을 납품 요구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기충전기 납품 검사 업무 부적정

부산광역시 ○○○○본부에서는 2015. 4월 공기충전기를 구매하면서 아래 **【표 1】** 과 같이 규격서에는 공기충전기 크기가 850 × 1225 × 1580mm(±10mm), 충전시간이 300BAR(50분용 공기용기) 1개당 5분 이내이며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납품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공기충전기 (MCH-24)의 사양서에는 크기가 790 x 1025 x 1545mm로 공고 규격과 비교하여 크기가 상이하고 충전시간은 납품 업체가 제출한 KFI 인증서에는 7분 이내⁶⁸⁾로 되어 있어 규격서 보다 공기충전기의 성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대체품 납품 등의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검사를 승인하여 장비를 납품받아 운용하고 있다.

【표 1】 공기충전기 구매 규격서 및 납품제품 성능 비교

68) ○○○○○기술원 문의 결과 KFI 인증에서는 300BAR 기준 7분 이내로 형식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됨

| 항목 | 규격서 | 납품제품 |
|------------|--------------------|---------------|
| 크기 (mm) | 850×1225×1580(±10) | 790×1025×1545 |
| 충전시간 | 5분 이내 | 7분 이내 |

2. 고무보트 납품 검사 업무 부적정

부산광역시 ○○○○본부에서는 2016. 6월 고무보트 구매 시에도 【표 2】와 같이 규격서에는 선체길이: 4,200mm(±10mm), 선체폭: 1,900mm(±10mm), 선체중량: 101kg 이하, 최대적재하중: 1,150kg 이상(30마력 선외기 포함)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납품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무보트의 제품사양서에는 선체길이: 4,300mm, 선체폭: 1,880mm으로 공고규격과 상이하며 선체중량(130kg)은 공고 규격보다 29kg 초과하며 최대적재하중(950kg)은 선외기 무게(52kg)를 제외하고 150kg이 부족함에도 ISO 보트 규격에 적정하다는 사유로 대체품 납품 등의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검사를 승인하여 해당 장비를 납품받아 운용중이다.

그 결과 해수욕장 인명구조 등 수상에서 다수 인명구조 업무수행 시 요구조자 수용능력이 제한되어 다수인 구조 활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고무보트 구매 규격서 및 납품제품 성능 비교

| 항목 | 규격서 | 납품제품 |
|------|----------------------------|-------|
| 중량 | 101kg이하 | 130kg |
| 적재중량 | 1,150kg 이상 (선외기 52kg포함) | 950kg |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납품 검사 업무 시 공고한 규격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반입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